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반성하라 ”

공정거래위원회가 모처럼 비수를 뽑아든 모양이다. 군납용 석유제품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정유5사에 무려 190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보면 무엇인가 단단히 결심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공정위 역사상 초유의 진기록 과징금이라고 평해야 할 정도이다.

SK를 비록 LG-Caltex정유, S-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한화에너지) 등 정유5사는 군납용 항공유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190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고, 조사를 방해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1901억원의 과징금은 1999년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부과된 780억원의 2배가 넘는 사상 최대규모이다. SK, 현대정유, 인천정유가 각각 475억원, LG-Caltex정유와 S-오일은 각각 238억원을 부과받았다. 조사에 협조한 LG-Caltex정유와 S-오일은 1/3을 경감받았고, 조사를 방해한 나머지 3개사는 1/3을 가중 부과받았다.

감사원이 국방부 감사에서 정유사의 담합행위로 1200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내고 환수를 권고한 액수보다 701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정유5사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의 총 계약금액 7128억원의 5%가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설정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2조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한 기업에 대해 「관련품목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부과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61조는 과징금 부과규모를 구체화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부당행위로 얻은 이익규모 등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모두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유5사의 군납 담당임원과 실무진들이 항공유와 경유 등 군용 석유제품 입찰과정에서 사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비밀리에 모여 입찰안을 사전에 합의, 항공사와 수협, 철도청 등 다른 수요처에 공급한 가격보다 훨씬 높게 단가를 써냈기 때문이다. 사전모임에서 유종별로 낙찰기업, 낙찰기업의 입찰가격, 들러리기업의 들러리 입찰가격, 희망물량, 항공유의 공급지역까지 치밀하게 합의했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유5사의 입찰 담합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군의 유류 수급에 비상상황이 초래되는 등 폐해가 극심한 점을 감안해 강도높게 처벌했다고 한다. 특히, 2000년에는 고의유찰로 군 비축유를 20%이상 사용하게 했고, 정유5사가 관련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등 조직적인 조사방해가 심각한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 반성하라고 호령하는가? 정유5사의 담합행위를 직접 적발해내지는 못했어도 담합의 증거를 확보했고, 사상 유래가 없는 1901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해 국민 마음속을 시원하게 달래주었고, 또 담합행위의 근원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나선 마당에 표창은 못할망정 반성하라니 그 무슨 망발인가 묻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그동안의 행태를 되짚어보면 전혀 그러하지 않으니 문제이다. 재벌 및 대기업들의 담합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음은 물론 주변의 신고 또는 진정을 당사자들에게 귀띔해줌으로써 오히려 신고자 또는 진정자를 코너로 몰아부치는 반국가적 행태를 자행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 않은가.

1994년 3월28일부터 1997년말까지 자행됐던 석유화학기업들의 합성수지 가격 담합행위도 마찬가지이다. 화학저널이 입증할만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분석기사를 10여차례에 걸쳐 게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조사하는 시늉에 그쳤을 뿐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학저널의 문제제기를 막고 화학저널의 심층분석기사를 게재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산업자원부 관계 공무원과 함께 화학저널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미국과 EU 등은 자국에 수출하는 다른나라 회사의 담합 여부까지 조사해 처벌하고 입찰 담합에는 강도높은 처벌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Lysine 및 Vitamin 가격을 담합한 BASF, Rhone-Poulenc (현

Aventis), Ajinomoto, 그리고 제일제당, 한국BASF(구 세원) 등에 부과된 어마어마한 과징금이 잘 말해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5사 담합을 강력하게 처벌한 것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담합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담합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2000/10/9>